

전북도민 행복 1순위는 '건강'

2위 경제·3위 사회문화·4위 관계 순

행복점수는 74점... 10년 전보다 하락

전북연구원은 6일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전북도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1순위 건강만족, 2순위 경제적 만족, 3순위 사회문화적 만족, 4순위 사회적 관계 만족, 5순위 보건복지서비스 만족, 6

순위 근로(교육)환경 만족, 7순위 지역사회 안전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은 스트레스정도, 경제는 월평균가구소득, 사회문화는 여가활동횟수, 사회적관계는 가족관계 만족도, 보건복지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근로환경은 고용안정성, 안전은 주거만족도가 도민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형 행복지표는 국내의 행복지표 공통영역과 전북도민 300여명이 참여한 원탁회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주관적 행복감, 경제적 만족도, 사회문화적 만족도, 건강만족도, 사회적관계 만족도, 보건복지 만족도, 사회안전 만족도, 근로(교육)환경 만족도 8대 분야 6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거주 주민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북도민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10년 전 75.0점, 현재 74.0점, 10년 후는 77.9점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9.0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나의 가치 7.9점, 삶의 성취도 7.4점, 미래의 희망 7.5점, 전북도민 자긍심 6.7점, 이웃신뢰도 6.6점, 취업기회 6.6점, 안전정도 6.9점, 생활환경 7.2점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임시회 개최 제34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12% 불과

5분발언서 도의회 양성빈 의원 전북도 적극적 지원 추진 촉구



농가입장에서는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과도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 등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시진)이 6일,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성빈 의원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법될 경우, 축사 사용증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는 예전에 없던 강경한 벌칙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월 말 기준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 4,961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단 12.8%(인 636농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상담조차 받지 않은 농가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유예기간 이후 상당수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보니 규정들이 더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현재까지 적법화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양 의원은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단 한 농가도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법화를 10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용도폐지 후 매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규정상 무단점유부분에 대한 철거 후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양 의원은 "전라북도는 철거 없이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경비원 인권보장, 미룰 수 없는 과제"

도의회 김영배 의원 발언 근로환경 개선 대책 필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중주택관리법에는 명시된 업무 범위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2·시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2일 시행을 앞둔 「공중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연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을 방지하고 적발·처벌하기 보다는 서서히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의 입법 취지 적극 동참한다"며 "경비원들에게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공공 실내수영장 물 안전할까?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조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도내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실내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도내 22개 공공실내수영장에 대하여 소독시설 점검 등 수영장수질기준 적합여부

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등 5개 일반항목과 비소, 수은 등 유해중금속 검사를 강화해 수영장수의 수질안전성을 점검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태수 원장은 "수질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독 및 여과시설 관리가 소홀한 수영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수영장을 찾는 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진지한 고민'

농식품 스마트 소비 간담회 농업인·소비자·정부 참석

전북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와 정부 간 정책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 스마트 소비농, 소, 정 간담회를 6일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농식품스마트 사업은 수입 등 대체농식품의 증가로 안전, 안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살충제 검출 달걀, 햄버거 병, 햄버거 먹은 후 집단 장염, 유럽산 햄과

소시지의 E형 간염원 등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소비촉진과 소비자들의 농식품 스마트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북도 농식품 소비자 정책, 전북농협, '로컬푸드'를 통한 소비촉진과 활성화 방안, 농산물 품질관리원,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리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익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학교급식 성공사례' 등 소비자의 농식품 스마트소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로 논의되는 자리였다.

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자, 소비자, 행정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17-466호

제3차 김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공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김제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제3차 김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 공고기간: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내용: 가. 개요

1) 계획기간: 2017년 ~ 2021년(5년간)

2) 대 상: 김제시 관내

3) 내 용: 김제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나. 주요내용

-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수립
- 3)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확충방안
- 4)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및 경쟁력 강화
- 5) 투자규모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4. 열람장소: 김제시청 경제교통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5. 의견제출

가. 김제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관계도서는 열람장소 및 김제시 홈페이지(hth://www.gimje.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제출서(양식)를 작성하여 김제시 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담당자(☎063-540-34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김제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